



대한건설협회

수신자 외국인력활용업체 대표이사

제목 **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등 협조요청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법무부에서는 ‘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집중단속’, ‘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(’18.10.1~’19.3.31, 6개월) 운영’ 등의 「**불법 체류·취업 외국인 대책**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, 동 대책을 불법체류 외국인은 물론 사업주 등 관계자에 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총 6개 국어(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태국어, 베트남어, 러시아어)로 안내문을 제작·배포하오니 **소관 현장에 적극 홍보·안내**하여 주시고,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**관리·지도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**관련자료 다운로드** : 협회 홈페이지(www.cak.or.kr)→뉴스·공고→공지사항(1350번 게시물)

4. 아울러, 동 대책과 관련, ‘**단순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**(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외국인 초청제한) **해제조치**’가 시행(’18.10.1~)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, 아래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에 **제한 해제대상 여부를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법무부 외국인초청(사증발급인정서 발급) 등 제한 해제조치 개요

◎ 외국인 초청 등 제한 개요

- 출입국관리법 제9조, 제20조,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의3에 따라, 허위초청, 외국인 불법고용 등 출입국관리사범, 근로기준법 위반,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**외국인초청(사증발급인정서 발급) 및 고용(체류자격 외 활동, 근무처변경·추가 등) 금지**

◎ 제한 해제 대상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)

- (요건①) **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위반자(단순 외국인 불법 고용주)로서, ’18. 9. 30. 이전 범칙금·벌금을 납부하여 사범처리가 종결되고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**
 - ※ 단, 허위초청, 각종 형사범죄,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제한을 그대로 적용함
- (요건②) **시행일 기준 최근 3년(’15.10.1~’18.9.30) 동안 출입국관리법 위반(과태료 처분 제외) 횟수가 2회 이하인 자**

끝.

